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기제공무원 (비서)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비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임용기간	근무장소
비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중구의회

※ 근무실적 평가 등에 따라 5년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하며, 업무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2 채용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3 직무내용 및 임용예정지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임용기간 (1주 근무시간)	근무예정부서	직무내용
비서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중구 의회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의원, 위원회 부속실 관리, 내방객 안내 및 전화 응대</li><li>· 의정자료 조사 및 취합</li><li>· 각종 행사 및 의사진행 사무 지원</li><li>·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사항</li></ul>

## 4 응시자격

### 1.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연령 및 성별 : 18세 이상인 자로 성별 · 지역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응시 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

**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6. 18.>
-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2. 개별 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 자격 요건
비 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 관련분야 경력의 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 기업체 등에서의 비서(행정사무) 등 경력</li> <li>※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인정</li> </ul>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5. 시험방법

### 1. 보수 수준 ※ 25년 보수지침에 따른 연봉으로 26년 처우개선분 반영 예정

- 연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

채용분야 (직급)	근무시간	하한액	비 고
비 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 35시간 (09:00 ~ 17:00, 1일 7시간) 주5일 근무	23,775천원	

- 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등)

## 6. 시험일정 및 방법

### 1.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 8. ~ 1. 12. 17:00까지  
※ 중식시간(11:30~12:30)은 접수 제외
- 접 수 처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02-3396-8155)
- 접수방법 : 방문접수(등기·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 < 방문접수 >

- 접수장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39길 40, 2층 의회사무과 의정팀 인사담당
- ※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능
- 중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수입증지(응시수수료) 구매 후 응시원서에 증지 날인
- ※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 대리접수(가능)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 : 공고문 7번 참조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2. 시험일정

구 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비서	1.16. 예정	1. 20. 예정	중구의회 소회의실	면접시험 다음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통지 함

○ 1차시험(서류심사) : 중구의회 및 중구청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 소정의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합격 처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심사) : 중구의회 및 중구청 홈페이지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점수)으로 평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중구의회 및 중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7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비서 5,000원

⇒ 수입증지 : 서울시 중구청(중구 창경궁로17) 본관 1층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담당창구에서  
응시수수료(수입증지비) 지급 후 응시원서에 인증기 날인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요

※ 원서접수처(중구의회)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음

2. 이력서 1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등 증빙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 1부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8.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사본 제출 가능[단 최종 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9.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별지서식 제9-1호]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한 경력증명서 제출

###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서식 제8-1호) 1부
2.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제9-1호) 1부
3. 기타 응시 관련 증빙서류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하여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응시자격요건과 무관한 자격증, 확인서, 증명서 등 제출 불필요

## 8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본인 방문수령만 가능하며 제출서류 원본에 한하여 반환 가능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2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중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인사담당(☎ 3396-8155)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임 제출서류 각 1부(별도 첨부). 끝.